

『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재 특정 성별,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

하고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

- 이에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, 시장은 혐오표현 피해를 받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, 혐오표현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